|  |  |  |
| --- | --- | --- |
|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6호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2014년 12월 19일의 국가세무총국 2014년도 제4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  2014년 12월 27일    정부기능의 전환, 행정 심사인가제도 심화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국무원의 행정 심사인가 항목 취소와 관련한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세무등기 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한다.  1. 제5조 2항을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이 통합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서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 날인이 찍힌 동일한 세무등기증 한 부를 발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은 납세자의 식별번호를 통일화시켜 시행한다.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납세자의 식별번호를 업계 표준 코드와 연계하여 정하고, 통일화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되도록 전달한다.  이미 수취한 조직기구대마(코드)를 부여 받은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모두 15자리이며, 납세자 등기 소재지 6자리 행정구획번호+9자리 조직기구대마(코드)번호로 구성되어있다. 업주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보는 조직 즉, 조직기구대마(코드)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개인사업자 및 회향증, 통행증, 여권을 지참하고 세무등기를 처리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 식별번호는 신분증번호+2자리 번호로 구성된다.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개인별로 하나씩만 부여된다.”  3.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와 생산경영을 담당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체(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통일함), 생산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2)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3)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상 단독결산 및 정기적으로 도급인/임대인에서 도급비용/임차료를 지급하는 시공업체/임차인은 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도급/임대업무가 발생한 지역의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중국 내에서 도급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 및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기업은 프로젝트별 계약서 또는 협의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관할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4. 제11조를 “본 방법 제10조 규정 이외의 기타 납세자(국가기관, 개인 및 생산, 경영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농촌 소상인을 제외)는 모두 세무의무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의무가 발생한 지역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5. 제15조를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자료의 완비여부와 세무등기표에 기입한 내용이 규정과 부합하는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당일 처리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무등기표에 기입한 내용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자료를 보충하거나 세무등기표를 재작성 하도록 통지한다.”로 수정한다.  6.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세무등기를 이미 처리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 지방 세무기관에서 원천징수 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 상 등기된 원천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원천징수 등기 증명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등기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원천징수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7. 제21조를 “납세자가 제출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일체는 세무등기 변경표에 기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당일처리하며,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수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8. 제22조를 “세무기관은 수리당일 세무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기표와 세무등기증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세무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기표의 내용은 변동되었으나 세무등기증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새로 세무등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로 수정한다.  9. 제27조를 “납세자는 휴업기간이 만료 후에 바로 생산경영을 시작할 수 없으며, 휴업기간 만료 전 세무기관에 휴업등기를 연장하고, 《휴업, 영업재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10. 제33조를 “세무기관은 한 지역 한 개의 증명서 발급원칙에 따라서，《외관증》을 발급하고, 《외관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11. 제42조 2항을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수징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2조 1항을 삭제한다.  12. 제43조를 삭제한다.  13. 제45조를 제44조 변경하고 내용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원천징수 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수정한다.  그 밖에 조목 중 개별적 문자를 수정하고, 조목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이 결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등기 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  **《税务登记管理办法》的决定**  国家税务总局令第36号  《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税务登记管理办法〉的决定》已经2014年12月19日国家税务总局2014年度第4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国家税务总局局长：王军  2014年12月27日  　　为贯彻落实转变政府职能、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精神，根据国务院关于取消行政审批项目的有关决定，国家税务总局决定对《税务登记管理办法》作如下修改：  　　一、第五条第二款修改为：“国家税务局（分局）、地方税务局（分局）联合办理税务登记的，应当对同一纳税人发放同一份加盖国家税务局（分局）、地方税务局（分局）印章的税务登记证。”  　　二、第七条修改为：“国家税务局（分局）、地方税务局（分局）执行统一纳税人识别号。纳税人识别号由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按照纳税人识别号代码行业标准联合编制，统一下发各地执行。  　　“已领取组织机构代码的纳税人，其纳税人识别号共15位，由纳税人登记所在地6位行政区划码+9位组织机构代码组成。以业主身份证件为有效身份证明的组织，即未取得组织机构代码证书的个体工商户以及持回乡证、通行证、护照办理税务登记的纳税人，其纳税人识别号由身份证件号码+2位顺序码组成。  　　“纳税人识别号具有唯一性。”  　　三、第十条修改为：“企业，企业在外地设立的分支机构和从事生产、经营的场所，个体工商户和从事生产、经营的事业单位（以下统称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向生产、经营所在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  　　“（一）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领取工商营业执照的，应当自领取工商营业执照之日起30日内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发放税务登记证及副本；  　　“（二）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未办理工商营业执照但经有关部门批准设立的，应当自有关部门批准设立之日起30日内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发放税务登记证及副本；  　　“（三）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未办理工商营业执照也未经有关部门批准设立的，应当自纳税义务发生之日起30日内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发放临时税务登记证及副本；  　　“（四）有独立的生产经营权、在财务上独立核算并定期向发包人或者出租人上交承包费或租金的承包承租人，应当自承包承租合同签订之日起30日内，向其承包承租业务发生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发放临时税务登记证及副本；  　　“（五）境外企业在中国境内承包建筑、安装、装配、勘探工程和提供劳务的，应当自项目合同或协议签订之日起30日内，向项目所在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发放临时税务登记证及副本。”  　　四、第十一条修改为：“本办法第十条规定以外的其他纳税人，除国家机关、个人和无固定生产、经营场所的流动性农村小商贩外，均应当自纳税义务发生之日起30日内，向纳税义务发生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税务机关发放税务登记证及副本。”  　　五、第十五条修改为：“纳税人提交的证件和资料齐全且税务登记表的填写内容符合规定的，税务机关应当日办理并发放税务登记证件。纳税人提交的证件和资料不齐全或税务登记表的填写内容不符合规定的，税务机关应当场通知其补正或重新填报。”  　　六、第十七条修改为：“已办理税务登记的扣缴义务人应当自扣缴义务发生之日起30日内，向税务登记地税务机关申报办理扣缴税款登记。税务机关在其税务登记证件上登记扣缴税款事项，税务机关不再发放扣缴税款登记证件。  　　“根据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可不办理税务登记的扣缴义务人，应当自扣缴义务发生之日起30日内，向机构所在地税务机关申报办理扣缴税款登记。税务机关发放扣缴税款登记证件。”  　　七、第二十一条修改为：“纳税人提交的有关变更登记的证件、资料齐全的，应如实填写税务登记变更表，符合规定的，税务机关应当日办理；不符合规定的，税务机关应通知其补正。”  　　八、第二十二条修改为：“税务机关应当于受理当日办理变更税务登记。纳税人税务登记表和税务登记证中的内容都发生变更的，税务机关按变更后的内容重新发放税务登记证件；纳税人税务登记表的内容发生变更而税务登记证中的内容未发生变更的，税务机关不重新发放税务登记证件。”  　　九、第二十七条修改为：“纳税人停业期满不能及时恢复生产经营的，应当在停业期满前到税务机关办理延长停业登记，并如实填写《停业复业报告书》。”  　　十、第三十三条修改为：“税务机关按照一地一证的原则，发放《外管证》，《外管证》的有效期限一般为30日，最长不得超过180天。”  　　十一、第四十二条第二款修改为：“纳税人不办理税务登记的，税务机关应当自发现之日起3日内责令其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依照《税收征管法》第六十条第一款的规定处罚。”删去第四十二条第一款。  　　十二、删去第四十三条。  　　十三、第四十五条改为第四十四条，修改为：“扣缴义务人未按照规定办理扣缴税款登记的，税务机关应当自发现之日起3日内责令其限期改正，并可处以1000元以下的罚款。”  　　此外，对条文的个别文字作了修改，对条文的顺序作了相应调整。  　　本决定自2015年3月1日起施行。  　　《税务登记管理办法》根据本决定作相应的修改，重新公布。 |